

예 산 총 칙

2009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748,500,786	22,455,024
일반회계	531,125,565	15,933,767
특별회계	217,375,221	6,521,257
공기업특별회계	114,992,990	3,449,790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79,035,990	2,371,08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5,957,000	1,078,710
기타특별회계	102,382,231	3,071,467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815,692	624,471
주택사업특별회계	2,660,347	79,810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3,123,404	93,702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1,040,000	31,200
기반시설설치 및 운영 특별회계	80,000	2,400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8,266,457	247,994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5,018,928	150,568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61,377,403	1,841,322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 세입·세출예산 " 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 채무부담행위조서 "와 같다.(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 계속비사업조서 "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 사업은 별첨 " 명시이월사업조서 "와 같다.(해당없음)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 4,068,833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34,8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